

1. 개정이유

국가·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, 보행안전지수의 공표,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보행안전법)이 개정('21. 6. 23. 시행)됨에 따라,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, 지정서 등 보행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(제11조)

- 시행령 제17조 위임에 따라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)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”란 별지 제3호서식의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를 말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영 제17조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”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신청인	명칭	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
	소재지	
	전화번호	
	설립 근거	
	설립 목적	
	설립 연월일	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(또는 대리인) (서명 또는 인)
(전화번호: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운영계획 2.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인력·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.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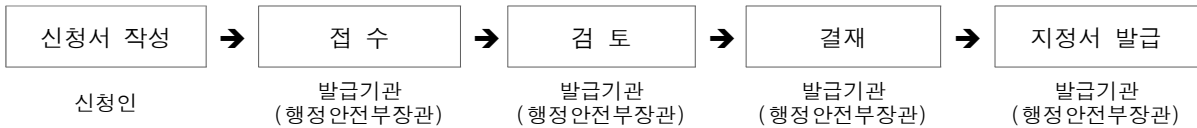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제 호

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

1. 기 관 명 :
2. 대 표 자 : (법인등록번호:)
3. 소 재 지 :
4. 전 화 번 호 :
5. 설립 근거:
6. 설립 목적:
7. 설립 연월일:
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 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(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)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”란 별지 제3호서식의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.</u> <u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</u> <u>③ 영 제17조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”란 별지 제4호서식의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말한다.</u>